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철학과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부산대학교 학칙」 제32조에 의거하여 철학과(이하 “학과”)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범위)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부산대학교 학칙」과 그에 의거한 제 규정에 따른다.

제2장 학과 교수회

제3조 (구성) 학과 교수회(이하 “교수회”)는 학과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학과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하고, 회의의 의장은 학과장이 맡는다.

제4조 (회의) ① 교수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며, 재직교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교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이 궐위 중이거나 회의 소집을 기피하여 회의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직교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회의가 소집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재직교원에는 휴직, 정직 및 6개월 이상 공무국외여행 중인 교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제5조 (심의) 교수회 회의는 아래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과정
2. 전임교원, 조교 및 시간강사 등의 인사
3. 예산 및 결산
4. 학사운영과 학생지도
5. 학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타 사항

제3장 학과 자율기구

제6조 학과 구성원들의 자율기구로 강사협의회, 대학원자치회, 학부학생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7조 (강사협의회) 학과 강사협의회는 전공강의와 교양강의를 담당하는 강사로 구성되고, 운영은 강사협의회의 규정에 따르며,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을 학과에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대학원자치회) 학과 대학원자치회는 대학원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재학생으로 구성되고, 운영은 대학원자치회의 규정에 따르며,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을 학과에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학부학생회) 학과 학부학생회는 학부 재학생으로 구성되고, 운영은 학부학생회의 규정에 따르며,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을 학과에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강사 위촉

제10조 (교양강의 담당강사 위촉)

1. 지원시기: 매년 12월 초에 실시하고 추가로 8월에 모집한다.(서식1) 다만, 학사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2. 지원자격: 대학원 박사과정 철학전공을 수료하고, 강의 해당연도 3월 1일을 기준으로 직전 2년간 연구실적(저서, 역서, 연구논문)이 1편 이상 있는 연구자. 다만, 해당 기간 내의 부산대학교 철학과 대학원 박사과정 연구논문 발표 합격을 연구논문 1편으로 인정한다.
3. 위촉기준: 학과 교양강의 이외의 교내강의를 담당하지 않는 지원자 가운데 연구실적의 양적 및 질적 평가를 통하여 우수자 우선한다.

제11조 (전공강의 담당강사 위촉) 전공강의의 담당강사는 이 규정의 제17조에 따라 위촉한다.

제5장 학부생 지도교수

제12조 학부생의 지도교수는 학년별로 1학년 1학기에 학과 교수 2명 또는 3명이 순차적으로 선정되며, 지도교수 1명이 해당 학년의 10명 또는 15명의 학생을 졸업할 때까지 지도한다. 다만, 편입생의 지도교수는 편입 해당학년의 지도교수가 맡는다.

제13조 지도교수는 한 학기에 1번 이상 지도학생을 면담하여 학교생활을 지도하며, 장학금을 지원하여야 할 경우 학과장에게 추천한다.

제6장 학부 교과과정 편성 및 강의개설

제14조 (교과과정 편성) ① 철학을 전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목을 전공기초와 전공필수로 편성하고, 전공기초와 전공필수를 보충하거나 심화하는 과목을 전공선택으로 편성한다.

② 전공기초, 전공필수, 전공선택 과목을 연계성과 심화과정을 고려하여 기본적인 과목은 1, 2학년 및 3학년 1학기에 편성하고, 세부적인 과목은 3학년 2학기과 4학년에 편성한다.

제15조 (교과과정의 이수) 다른 학과의 전공을 부전공으로 이수하려는 학부생은 학과의 심화전공을 병행 이수하도록 지도한다.

제16조 (강의개설) 교과과정에 편성된 과목은 해당 학기에 아래의 각 호에 따라 개설한다.

1. 전공 기초와 필수 과목은 동일 시간대에 개설하지 않는다.
2. 동일 학년의 과목은 동일 시간대에 개설하지 않는다.

제17조 (강의배정) 각 학기에 개설되는 전공강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배정하되, 교수회 회의에서 심의한다.

1. 전공 강의는 전임교원이 담당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교수회 회의에서 해당 강의의 담당 강사를 지명할 수 있다.
2. 계열공통, 교직과정, 논술트랙 과목은 전임교원이 순차적으로 담당하되, 전임교원이 담당하지 않을 경우 교수회 회의에서 해당 강의의 담당 강사를 지명할 수 있다.

제7장 논술교육 인증과정

제18조 (교과과정 편성) 논술교육 인증과정(이하 “인증과정”)의 과목은 학과 교과과정에 편성된 과목 중에서 전공기초, 전공필수, 부전공필수, 복수전공필수 과목을 중심으로 편성한다.

제19조 (인증과정의 운영) ① 인증과정의 이수자격은 학부과정을 2학기 이상 이수하고, 철학을 전공, 복수전공, 부전공하는 학부생으로 한정한다.

② 인증과정의 이수자는 매 학년도 제1학기 시작 전에 이수신청서(서식2)를 접수하여 직전 두 학기의 평균평점에 따라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③ 인증과정의 인원은 학과 학년별 정원의 30% 이내로 선발하되, 복수전공 및 부전공 학생을 포함할 경우 30% 이상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④ 인증과정 이수포기서(서식3)를 제출한 학생에 대해 재신청을 제한한다.

제8장 학부생의 학적에 관한 사항

제20조 (복수전공)

1. 복수전공의 지원 시기와 방법은 학칙에 따른다.
2. 복수전공 허가는 교수회 회의에서 심의한다.

제21조 (전과)

1. (전출 지원자격) 전과지원 직전 학기까지 학과의 전공기초와 전공필수를 모두 이수한 학부생은

다른 학과로 전과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전과를 허용하지 않는다.

가. 교직 신청자 및 이수자

나. 교내장학금 수혜자(입학장학금 및 국가장학금 제외, 반환불가)

2. (전출 인원)

가. 동일학번의 입학정원 **10%** 범위 안에서 전출을 허용할 수 있다.

나. 전과지원은 한 학생 당 **1회**로 한정한다.

3. (전출 추천) 성적과 적성을 고려하여 교수회 회의에서 심의하여 추천한다.

4. (전입 인원) 동일학번의 입학정원 **20%** 범위 안에서 전입을 허용하되, 교수회 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9장 학부 장학금

제22조 (성적장학금) 학과에 배정된 성적장학금은 학년별 성적순으로 수여하되, 아래의 각 호에 따른다.

1. 수혜 대상자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학년별 성적 장학금 액수를 조절할 수 있다.

2. 국가장학금과 성적장학금을 합한 금액이 등록금 전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한다.

3. 수혜 대상자가 학부형의 직장에서 복지장학금을 수혜할 경우 성적장학금 우선순위에서 제외한다.

제23조 (기타 장학금) 기타 학과에서 수여하는 장학금은 기탁자의 의도에 맞게 수혜 대상자를 선발한다.

제10장 학부 졸업논문

제24조 (졸업요건) 학부 학생은 졸업하기 위해 학교에서 규정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야 하고, 졸업논문발표에서 합격하여야 한다.

제25조 (졸업논문 심사) 졸업논문을 심사하기 위해 다음의 절차를 진행한다.

1. 졸업논문계획서 제출: 졸업논문을 심사 받고자 하는 학생은 희망 지도교수가 명시되고, 해당 교수의 승인을 받은 졸업논문계획서(서식4)를 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졸업논문계획서 승인: 교수회 회의에서 심의하여 승인한다.

3. 졸업논문 발표: 통상 5월과 11월 셋째 주 금요일에 졸업논문을 발표한다. 졸업논문 발표자는 발표 1주일 전까지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졸업논문 전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발표 3일 전까지 발표 요약문 15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졸업논문 제출: 발표 후 합격하고 지도교수의 추가 지도를 받아 승인된 최종논문을 졸업 2개월 전까지 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 (졸업논문 양식) 졸업논문은 아래의 각 호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1. 용지와 여백: A4 용지 위, 아래, 좌, 우 여백을 30mm로 한다.

2. 양식: 가로쓰기하여 세로로 작성하며, 본문 글자크기 11P와 160%의 줄 간격을 유지한다.

3. 논문 분량: 본문 15매 이상으로 한다.

4. 표지: 서식5에 따른다.

제11장 대학원 입학

제27조 (입학시험) 학과 대학원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의 입학시험은 다음에 따른다.

1. 석사과정 지원자는 학부과정 전공과 상관없이 특별전형, 후기전형 또는 전기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2. 석사과정 특별전형에서 영어번역 시험성적을 반영한다.

3. 박사과정 지원자 중 석사과정 전공이 철학일 경우 특별전형, 후기전형 또는 전기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4. 박사과정 지원자 중 석사과정 전공이 철학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전공(미학, 윤리교육)이수자 일

경우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특별전형, 후기전형 또는 전기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5. 박사과정 지원자 중 석사과정 전공이 철학과 연관이 있는 전공 이수자일 경우 학과장의 유사전공 추천을 받아 전기전형에 응시하여야 하며, 특별전형과 후기전형에는 응시할 수 없다.
6. 박사과정 지원자 중 석사과정 전공이 철학과 연관이 없는 경우는 특별전형, 전기전형, 후기전형에 지원할 수 없다.
7. 박사과정 특별전형에서 영어, 한문, 중국어 중 1개 언어번역 시험성적을 반영한다.

제28조 (합격자 선정)

1. 학과에 배정된 입학정원 중 각 학위과정 계열별로 최소 1명씩을 우선적으로 정시전형에 배정하되, 정시전형에서 합격자가 없을 경우 다음 학기의 특별전형에서 합격자를 선발한다.
2. 박사과정 전공별 합격자 수는 최근 2년간의 입시결과를 고려하여 배분하되, 해당 지원자의 성적이 현저하게 부족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예외로 한다.

제12장 대학원 강의

제29조 (편성) 교수 1인당 6개 이내의 강의를 편성할 수 있다.

제30조 (개설) 교수 1인당 1개 강의를 해당 학기의 사정에 맞게 개설하되, 아래의 각 호에 따른다.

1. 동일 강의를 3학기 내에 개설하지 않는다.
2. 동일계열 강의는 동일 시간대에 개설하지 않는다.
3. 지도교수가 연구년 또는 안식년을 수행 중일 때 논문연구는 학과장이 개설하거나 학과장이 위임한 교수가 개설한다.

제13장 대학원 지도교수

제31조 (학위논문계획서 제출) 대학원 학생의 지도교수를 선정하기 위하여 석사과정은 제2학기 시작 후 2주 이내, 박사과정은 제1학기 시작 후 2주 이내에 학위논문계획서(서식6)를 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 (지도교수 선정) 교수회 회의에서 제출된 학위논문계획서를 검토하여 해당 학생의 지도교수를 선정한다.

제14장 대학원 보충과목

제33조 (이수 대상자) 하위과정에서 철학을 전공하지 않은 석·박사과정 입학생은 학과에서 부과하는 보충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학점은 수료학점에 가산되지 않는다.

제34조 (이수학점) 보충과목은 5과목 15학점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다만, 하위과정에서 이미 이수한 과목을 교수회 회의에서 보충과목으로 인정할 경우 그 이수를 면제한다.

제35조 (과목부과) 석사과정은 학부의 전공기초와 전공필수 과목 중에서, 박사과정은 대학원의 전공과목 중에서 보충과목을 학과장이 부과하고, 교수회 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제36조 (과목이수) 해당 학생은 부과된 보충과목을 우선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동일과목 성적이 2회에 걸쳐 이수성적에 미달할 경우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다른 과목의 부과를 신청하고, 교수회 회의의 승인을 받아 다른 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제15장 대학원 이수학점의 인정

제37조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타 학과에서 개설한 과목을 이수할 경우 지도교수의 승인서(서식7)를 수강신청 전 학과에 제출하여 교수회 회의에서 심의 받아야 한다.

제38조 각 과정 최대 3학점에 한정하여 타 학과에서 개설한 과목을 이수할 수 있으며, 지도교수가 정해

지지 않았을 경우 학과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장 대학원 필독서

- 제39조 (적용연도) 2009학년도 제1학기 입학생부터 필독서를 부과하지 않으며, 그 이전의 입학생은 아래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 제40조 (필독서 수) 필독서는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각 3권을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결정한다.
- 제41조 (평가방법) 평가는 번역, 구술, 리포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구술평가는 해당 전공계열에서 주관한다.
- 제42조 (제출시기) 매학기 개강 후 1주일 이내에 평가 도서 및 방법을 학과에 알려야 하며, 번역 및 보고서의 경우 해당 기간 내에 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3조 (평가자 선정) 번역 및 보고서의 평가교수는 교수회 회의에서 선정한다.
- 제44조 (평가) 평가결과는 매학기 개강 후 1개월 이내에 학과에 제출되어야 하며, 평가에서 탈락한 경우 동일학기에 필독서 변경이나 재평가는 허용되지 않는다.
- 제45조 (완료시기) 필독서의 완료시기는 석사과정의 학위청구논문 또는 박사과정의 예비논문을 제출하려는 학기의 대학원 청구논문 제출일 이전으로 한다.

제17장 대학원 연구 및 예비 논문

- 제46조 (연구 및 예비 논문)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위하여 석사과정은 1회의 연구논문을 발표하고 합격하여야 하며, 박사과정은 3회의 연구논문 및 예비논문을 발표하고 합격하여야 하며 또한 예비논문의 심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박사과정의 예비논문은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예비심사를 위한 논문이다.
- 제47조 (학술지 게재) 박사과정의 연구논문 발표 3회 중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이상의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이 1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학술지 게재가 확정되었으나 학과 연구논문 발표회 이전에 출판되지 못할 경우 「게재 확정 증명서」를 첨부하면 게재된 것으로 인정한다.
- 제48조 (발표 시기)
1. 석사과정의 연구논문은 전공계열에서 발표하며, 각 전공계열에서는 방학 중에 계열발표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학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서양철학 계열은 2월과 8월의 마지막 금요일에 발표한다.
 2. 박사과정의 연구논문 발표는 매 학기 중에 실시하며, 그 시기는 통상 3월과 9월의 마지막 주 금요일로 하되, 학과의 일정을 고려하여 학과장이 결정한다.
 3. 박사과정의 예비논문 발표는 이규정 제60조(학위청구논문 발표)의 일정에 따라 실시한다.
- 제49조 (발표 제한) 연구논문은 한 학기에 1회만 발표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정 제47조에 해당되는 논문을 포함하여 한 학기에 2회 발표할 수 있다.
- 제50조 (발표문 제출) 발표할 논문의 전문은 발표 1주일 전까지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확인서와 함께 학과에서 요구하는 부수만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표시 요약문을 사용할 수 있다.
- 제51조 (연구논문 발표회 참석) 대학원 재학생은 연구논문 발표회에 참석할 의무가 있으며, 불가피하게 불참할 경우 3일 전에 불참사유서(서식8)를 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수회 회의에서 해당 학생에게 소정의 벌칙을 부과할 수 있으며, 불참사유서를 동일 학기 내에 연속하여 제출할 수 없다.
- 제52조 (지도교수 참석) 연구논문과 예비논문의 발표회에 해당 학생의 지도교수가 특별한 사유(해외파견 등) 없이 불참할 경우 해당 학생은 다음 학기에 다시 발표하여야 한다.
- 제53조 (합격 여부)
1. 발표한 연구논문과 예비논문의 합격 여부는 발표 당일 전공계열 또는 교수회 회의에서 결정하며, 석사과정 연구논문의 결과는 학과에 통보되어야 한다.

2. 평가는 '가' 혹은 '부'로 하되, 참석교수 과반수 이상 '가'로 평가한 경우에만 합격으로 결정한다.
3. 박사과정의 연구논문이 이 규정 제47조에 해당될 경우 통과한 것으로 인정하여 합격여부의 결정에서 제외한다.

제54조 (재발표) 연구논문 및 예비논문 발표에 불합격할 경우 다음 학기에 재발표할 수 있다

제55조 (예비논문의 심사) 예비논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심사한다.

1. 예비논문 발표에서 합격한 논문에 대해 심사한다.
2. 예비논문의 심사는 지도교수와 지도교수가 위촉한 2인이 담당한다.
3. 지도교수는 심사의 시작을 학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예비논문의 심사기간은 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출 전 6개월 이상으로 한다.
5. 지도교수는 심사가 종결된 후 결과보고서(서식9)를 학과에 제출한다.

제18장 대학원 종합시험

제56조 (종합시험) 학위청구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해당 학생은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석사과정은 4과목, 박사과정은 5과목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제57조 (응시과목의 제한) 학과에서 주관하는 과목별 시험에 불합격할 경우, 해당 과목에 재응시하여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불합격할 경우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응시과목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교수회 회의에서 응시과목 변경을 심의한다.

제19장 대학원 학위청구

제58조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제출 자격) 석사학위 청구논문은 필독서시험(2009학년부터 면제), 계열 연구발표, 종합시험에 합격한 후에 제출할 수 있다.

제59조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제출 자격) 박사학위 청구논문은 필독서시험(2009학년부터 면제), 외국어시험, 제2외국어시험, 연구논문발표(3회)와 종합시험, 예비논문 발표에 합격하고, 예비논문 심사를 통과하여야 제출할 수 있다.

제60조 (학위청구논문 발표) 학위청구논문 발표는 매 학기 중에 실시하며, 그 시기는 통상 4월 마지막 주 금요일과 10월 마지막 주 금요일로 하되, 학과의 일정을 고려하여 학과장이 결정한다.

제61조 (발표문 제출) 이 규정 제50조(발표문 제출)와 같다.

제62조 (학위청구논문 발표회 참석) 이 규정 제51조(연구논문 발표회 참석)와 같다.

제63조 (지도교수 참석) 이 규정 제52조(지도교수 참석)와 같다.

제64조 (기타) 학위청구 절차 및 심사위원 선정, 심사 일정 등은 학교 규정에 따른다.

부칙

1. 제16장 필독서 사항은 2009학년도 제1학기 이전 입학생에 적용된다.
2. 이 규정과 「부산대학교 학칙」 및 그에 의거한 제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수회 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합의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3. 이 규정은 2015년 3월 이후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서식1]

철학과 시간강사 지원서

성 명	(한자)			사진 (3x4cm)
주민등록번호				
현 주 소	□□□-□□□	E-Mail:		
	전화:	휴대폰:		
학 력 사 항	년 월	소 속	전 공	학 위
경 력 사 항	근 무 기 간	대 학	학 과	담 당 과 목
0000년 다학교/학과 강의사항				
최근 2년간 연구업적	논문 제목	발표 년 월일	게재지 발행처	

작 성 일 : 2013년 월 일

지 원 자 : (인)

《 졸업 논문 계획서 》

희망지도교수님 :

(인) **확인도장** 받아야합니다.

학번	
이름	
주제 및 제목	
연구 동기	
연구 방향	
서: 본: 결:	
참고 문헌	

[서식5]

문학사 학위논문

제목
-부제목

2014년 1월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철학과

0 0 0

문학사 학위논문

제목
-부제목

지도교수 0 0 0

2014년 1월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철학과

0 0 0

<차 례>

I. 서 론	0
II. 제목	0
1. 제목	0
2. 상동	00
3. 상동	00
III. 제목	00
1. 제목	00
2. 제목	00
3. 제목	00
IV. 제목	00
1. 제목	00
2. 제목	00
1) 제목	00
2) 제목	00
3) 제목	00
3. 제목	00
V. 제목	00
참 고 문 헌	00
Abstract	00

학위 논문 계획서

학 번		성 명		전 공	
논문제목					
논문 개요					
희망 지도 교수	교수님 (인) <i>희망지도교수님의 서명 또는 날인</i>				

<참고문헌>

[서식7]

타전공 및 타학과(부) 교과목 인정 신청서

학 과 : 철학과(과정)

전 공 :

학 번 :

성 명 :

본인은 아래의 타전공 및 타학과(부)의 대학원 과정 교과목을 전공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이수학점				전공인정 신청과목			
전공기본	전공선택	일반선택	총학점	개설학과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

2013. . .

신 청 자 : (인)

지도교수 : (인)

부산대학교 철학과장 귀하

사 유 서

학과 : 철학과

과정 : 박사() / 석사()

학번 :

성명 :

불참 행사명 및 일시 :

불참 사유 :

20 년 월 일

철 학 과 장 귀하

